

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(음악영재)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5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 지원 사무는 「문화예술교육지원법」 제21조에 의거, 예술에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·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,
- 나.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하여 경험 및 전문성과 인적·물적 인프라 등이 풍부한 민간에 교육을 위탁·운영 중이며
- 다.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 지원
- 사업내용 : 음악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 발굴, 대학 등의 인적·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
- 교육대상 : 저소득층 초·중·고교생 총 100명
- 교육기간 : 약 9개월간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나. 주요 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3. 1 ~ 2025. 12)
- 위탁업무
 - 교육생 모집 및 선발, 교육 과정 운영
 -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교수진 구성
 -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,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
- 소요예산 : 500,000천원 * 1년 간 위탁기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-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(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'23년도 예산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'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'적정' ('22.7.26.)

※ 작성자 :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황효빈 (☎ 2133-2565)